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기후위기 적응역량 제고 및 기후회복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후변화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적응시책 수립 등의 기본원칙과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수집·관리·공개·활용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적응정보 생산 표준체계를 설정·관리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 및 기후위기 취약성을 조사·분석하여 기후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축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기후위험 저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국가·지방·공공기관의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한 기후위기 적응 정책협의회 및 각 시·도별 기후위기 적응 지방협의회를 설치하며, 적응 진척도 점검 및 적응 확산 평가 제도를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기후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기후위기 적응산업 육성 및 산업계 대응력 강화를 지원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 적응정책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를 지정·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 추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자금지원을 위한 재정 근거 등을 명시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II. 검토의견

1. 실태조사 관련 자료요청 근거 신설(안 제21조제5항)

안 제21조제5항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등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안 제21조제1항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등의 실태조사 실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정작 누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지 그 권한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조사를 수행하는 행정청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자체도 누락되어 있음.

이에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권한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제 정 안	수정의견
제21조(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기후	제21조(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① (제정안과 같음)

위기 취약계층에게 이상기후 등이 초래하는 기후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생략)	② ~ ④ (생략)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생략)
---	--

2. 지원기구 지정취소 근거 신설(안 제22조제5항)

안 제22조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지원기구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지정취소와 같이 상대방에게 부여된 법적 지위나 권한을 박탈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은 그 실체적 요건을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정안에는 지정취소에 대한 실체적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유사 입법례¹⁾를 참고하여 지원기구의 지정취소 근거조문을 신설하면서, 구체적인 사유까지 시행령에서 이관하여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① ~ ④ (생략)
- ⑤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도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및 지정취소,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지원기구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수정의견
제22조(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① ~ ③ (생략) ④ 정부는 취약계층·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u><신 설></u>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취약계층·지역지원사업의 <u>시행, 제4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① ~ ③ (생략) ④ (제정안과 같음)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제5항----- -----시행, 지원기구의----- -----등에 필요 한-----.

3. 부칙 정비(다른 법률의 개정 보완,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신설 등)

제정안은 종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규정(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 등)을 대거 분리 및 이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이관되는 조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2장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 및 기후위험 평가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① 감시예측관리체계 구축·운영 [이관] ② 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제7조(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 ① 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이관] ③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제9조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공개와 활용) ③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제37조의2(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이관 수정]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등 활용하여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	제10조(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 등) ① 기후 감시 및 예측 정보, 사회·경제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취약성 조사·분석
제38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정] ① 국가 적응대책 수립 [이관] ②~⑥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방법 등	제3장 기후위기 적응 대책 제13조(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기본법 제38조 제1항 인용 ②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방법 등
[이관] 제39조(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제14조(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
[이관]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제16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이관] 제41조(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제18조(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관, 수정] 제42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제4장 기후회복력 증진 제22조(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유지] 제43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
[유지] 제44조(녹색국토의 관리)	-
[유지]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
[이관] 제4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제5장 기후위기 적응정책 기반 조성 제26조(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제7장 정의로운 전환	제5장 기후위기 적응정책 기반 조성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유지] ① 지원, [이관] ② 농·수산물 수급 안정	제25조(산업계 기후위험 대응 지원) ② 농·수산물 수급 안정
[이관, 수정] ④ 취약계층 실태 파악, 대책 마련	제4장 기후회복력 증진 제21조(취약계층 실태조사) ①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이에 다른 법률들의 인용 조문을 제정안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부칙의 다른 법률의 개정 조문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다수의 행정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명 또는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정법 시행에 따른 일선 행정현장의 법적 공백 및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부칙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부칙(안)	수정의견
제1조(시행일) (생략)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 -----.
<신설>	제16조제7호 중 “제38조 및 제39조”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법률 제2152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8호 중 “제38조 및 제39조”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제40조제2항·제4항”을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4항”으로 한다.
	----- ----- ----- ----- -----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를 “기후위기감시예측	

관리체계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를 “의”로 한다.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중 “5년마다 수립”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6조를 각각 삭제한다.

<신 설>

제47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신 설>

<신 설>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

법률 제211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의2를 삭제한다.

법률 제21527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를 삭제한다.

제80조제3호를 삭제한다.

②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을 “제38조제1항 및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제2호,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신 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1항 중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한다.
제10조(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신 설>	제2조(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정안 부칙 제10조와 같음)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주서본 참조).

Ⅲ. 관계기관 의견

경기도는 안 제23조제3항의 기후보험 보험료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폭염·한파 등 기후재난은 모든 국민의 생명·건강 및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위험임에도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만 한정할 경우 일반 국민이 제외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기후보험 도입에도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을 국민 전체로 확대하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보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안 제32조제4호와 관련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재원을 타 기금 등에 활용하는 것은 목적성 재원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농업·농촌 분야 재정의 안정적 투자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해양수산부는 안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 지방협의회의 참여 대상과 관련하여, 연안침수·해수면 상승·항만 및 어항 안전 등은 지역 단위 적응정책과 직접 연계되는 사항이므로 지역 해양수산 행정과 적응정책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전문위원 이 세 진)